

# 지방세 압류와 채권의 전부명령과의 관계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세정과 서기관

## I. 의 의

통상적으로 지방세가 채납된 경우 채납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납자의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하여야 하나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3자에게 채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통상 채권압류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며, 법원으로부터 채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지방세 채납액을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부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채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보다 채권확보에는 유리하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압류채권자·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규정에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

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동법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또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전부명령이 있는 뒤에 동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제230조의 규정에서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에 대하여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부명령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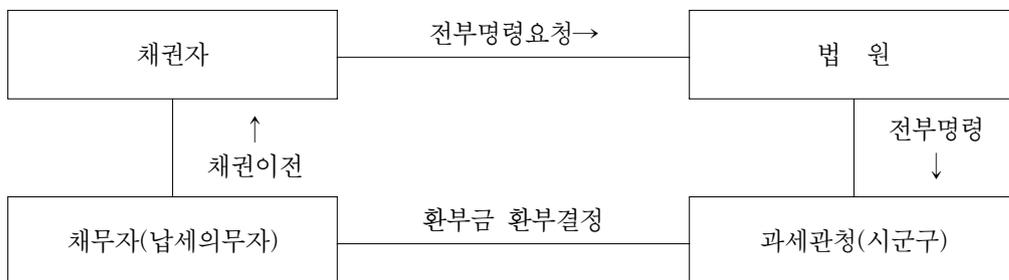
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추심명령의 효과는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나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 II. 채권에 대한 압류

### 1. 채권의 범위

채납처분에 있어서의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즉, 일반적인 채권 중에서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도 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

<채권의 전부명령과 지방세 압류 흐름>



심할 수 없는 권리(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등록공사채의 채권 등)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 2. 채권의 압류절차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의 작성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권 압류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를 한 때에는 지방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또한 그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채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압류조서에는 채권의 추심, 양도, 기한의 유예, 채권면제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그 등본을 채납자와 제3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 수량, 금액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또 채납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 3. 채권압류의 범위와 효력

채권압류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지방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나, 압류할 채권이 지방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채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하여야 하나 압류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채납액을 초과하는 채권 전부의 압류가 가능하고, 이것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계속수입인 경우에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즉,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월세 등으로써 동일한 계속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계속수입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특히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각 지급기일마다 그 금액을 개별적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단, 압류효력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채권압류통지서의 여백 등에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인지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료승급, 승진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생기는 법정과실인 이자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류전에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해야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나 채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대판] 채무이행금지과 채권압류의 효력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압류조서에 국세징수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거나, 압류조서나 채권압류통지서의 체납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표시란에 목적 토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되어 있거나 체납자에게 위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대판 88다카 19033, 1989. 11. 14)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그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만일, 송달 받은 후 체납자에게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를 가지고 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압류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하지

않는 한,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압류명령의 통지와 추심명령의 통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압류권자에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례]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행사거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4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 2931, 1989. 1. 17)

[판례] 체납을 원인으로 한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권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 86다카 2476, 1988. 4. 12)

#### 4. 채권의 변제

##### 가. 가압류의 경합과 제3채무자의 변제

압류처분과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가압류가 압류에 우선하는 채권에 기인한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고, 가압류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 70다1291970. 3. 24)

##### 나. 압류채권에 대한 대위행사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의 추심권한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채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압류권자의 추심권한은 압류에 의하여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추심에 있어서 채납자가 가지는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채납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으로서 채납자의 명의로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권자의 명의로 추심한다.

[판례] 유가증권의 추심방법

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유가증권

의 추심은 세무서장이 자기명의로써 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을 말하고, 채납자 명의로써 추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 82다카 449, 1985. 4. 9)

##### 다. 채권의 압류와 상계

제3채무자가 압류권자의 압류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했어도 압류당시까지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상계권은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러야 발생하고 압류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여도 그 상계권은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상계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압류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상계의 시기가 압류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의 변제기는 압류 전에 도래하였으나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때에는 압류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계적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3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상계할 수 있고 상계의 한도에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압류권자의 압류 후에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반대채권으로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그 상계

로써 압류권자에 대항 할 수 없다.

[판례] 유가증권의 추심방법과 상계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채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82다카 449, 85. 4. 9)

2.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의 상계권국세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대판79다 662, 1979 .6. 12)

3. 과세관청이 채납처분으로 채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채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85다카 2539, 1988. 9. 13)

5. 특수한 채권의 압류

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며,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를 압류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고 기입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 미치므로 압류권자는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고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는 제외)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한다(국세징수법 통칙 3-5-5...41).

나.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압류

1개의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압류는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하며, 그 보증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제 438조)

다. 상계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1) 채권의 압류와 계약에 기한 상계

채권압류 전에 상계계약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상계의 효력은 유효하며 압류권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고, 채권압류 후에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이거나 압류 전에 한 상계계약이라 하더라도 압류권자에 의한 압류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상계는 압류 후에 된 처분이므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반하게 되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실제 금융기관의 예금·적금 압류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적금담보부 대출의 경우, 금융자산 조회시 예금·적금은 금융자산으로 압류하였으나 추심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당사자 사이의 상계특약을 적용하여 예금·적금과 대출을 상계시키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2)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과 압류 후의 상계

압류 후에 상계할 수 있는 경우로는 압류 전에 이미 쌍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

기가 모두 도래하였거나 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반대채권에 있어서 그 변제기간을 도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반대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 또는 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하여 이행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는 압류 전에 도달 한 것이 아니므로 압류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 6.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채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에 관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하는 바, 예를 들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체비지를 압류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매수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산권을 압류 촉탁하는 것이다.

## Ⅲ. 지방세 압류와 채권의 전부명령

### 1. 전부명령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

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전부명령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기하여 금전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갖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즉, 전부시키는 명령을 전부명령이라 할 때 전부명령이 법원에서 당해 은행에 송달된 때에는 목적예금 채무가 존재하는 한 동예금을 전부채권자 앞으로 이전되고 집행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때 전부채무자의 집행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나 전부된 채권에 조건이나 항변이 부착되어 있다거나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함께 이전되므로 전부권자는 상계항변으로 대항하거나 질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 또는 전부명령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서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같이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한 방법이지만 추심명령과는 달리 전부채권을 그 액면만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부채권 전부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되

고 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채권(押留債權)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인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으므로, 그 뒤의 위험부담은 추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또한,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채권이 채무명의 채권보다 클 때에는 후자의 한도에서 이전하는데 그치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의 한도 내에서 소멸된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절차는 종료하므로 이후 집행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통상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므로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이미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되므로,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채무자가 되며, 항변사유(抗辯事由)로써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압류채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전부명령 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사례〉 甲은 그의 소유 아파트를 전세보증금5000만원, 전세기간2년으로 하여 乙에게 전세를 주었다. 그런데 1년후 甲에게 A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목적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이 경우 甲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전부명령은 채권자 평등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전부명령으로 전부채권자는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므로 전부명령 후에는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부명령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된다. 또 전부명령 전에 다른 가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되어 종전 가압류와 동일한 채권자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독점적인 변제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甲(임대인)은 제3채무자, 乙(임차인)은 채무자가 되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甲은 乙의 채무자가 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갑은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하여 즉시 응할 필요는 없고 전세기간 종료시에 전세건물을 명도받고 전부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면 된다.

## 2. 전부명령과 지방세 압류와의 관계

위의 사례에서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 가. 전부명령과 채권 대위추심의 창설적 효력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그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의미는 압류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추심권능은 동법동조의 규정에서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의 대리인이나 승계인으로서 체납자의 명의로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추심하는 것이다.

### 나. 채권과 체납처분의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에 의한 전부명령의 가능성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 대위추심의 창설적 효력에 의거 가능하다 할 것이다. 즉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전부명령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의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아니나, 국세징수법상의 채권확보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확보절차와는 별개이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속채권의 경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변

제된 이후에 조세채권압류에 기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추심명령이 결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과세권자 또는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을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하면 면책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변제로서 면책되는 것은 추심명령에 응한 때문이나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결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것이다.

[판례] 강제집행과 압류의 결합시

우선적 효력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결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

[통칙]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4...42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체납처분절차과 민사집행절차의 양립성

[1]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에도, 국가로서는 체납처분 당시 경합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판례]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집행의 중복효력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42 판결)

**3.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

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방세를 압류할 경우에도 수인의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확보할 경우에도 그 채권에 대하여 특정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 조세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의 경합시 우선효력

채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한다.(징세46101-1458, 1999. 6. 18.)

[판례]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판례]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1. 5. 2003마 1667 결정)

[판례] 전부명령과 증명서의 입증범위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증명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71 다2703, 1972. 2. 22.)

[판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의 전부명령의 효력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 4857 결정 )

[판례]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시점 판단

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 4. 전부명령의 적용례

##### 가. 환부금에 대한 전부명령시 정당한 청구권자의 범위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공매대금의 환부금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당한 환부권자는 다음 차순위 배당을 받는 자가 이에 해당되거나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실제의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이고, 결국 그 환부금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는 일반 채권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 [사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환부권자의 범위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 압류재산매각대금의 배분이나 충당에 있어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지방세가 산금·증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

한을 초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및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참조)으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분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귀 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게 법정기일이 도래한 취득세가산금·증가산금을 교부청구하여 과세관청에 배분되었다면 그 가산금·증가산금에 대한 배분액을 지방세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환부이자를 계산하여 채권자인 귀 공사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3407-177, 2003. 3. 6.)

##### [판례] 전부명령당시의 환부금에 대한 채권자의 범위

가. 국가가 국세의 체납처분 절차 당시 일반 채권자로부터 공매 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있었던 상태인 경우 국가가 그와 같이 과납세액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에 참여한 바 있는 일반 채권자들이 위 국세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그들의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교부받았을 것이어서,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실제의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이고, 결국 그 환부금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는 일반 채권자들이다.

나.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

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판례]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을 압류당한 질권자에게 국제환급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1) 국제징수법 제34조·제80조 제2호·81조 제1항 및 제84조 등의 규정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 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질권자는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 부터 양도·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 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위의 경우 질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질권자가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판 86다카 1058, '87. 5. 26)

[판례] 골프회원권의 압류대상판단

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컨트리클럽의 골프개인회원권은 입회희망자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지위로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회칙상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권자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원권이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압류후에는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원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골프회원권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소정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다. 골프클럽회원의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해지(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인 이상, 입회금반환청구권은 비록 입회금반환사유가 발

생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 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인 골프장운영회사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입회금반환사유는 그 송달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나. 전부명령의 변경과 불복청구

채권의 전부명령에 대하여 오류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경정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 [판례] 전부명령과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1]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과와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체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는지를 추인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나 그 경정결정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나 경정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95다15667, 1998. 2. 13.)

[판례] 상계적상과 압류대항문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

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판례] 전부명령의 강제집행 불복가능성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0. 17. 자 86그139 결정)

[사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납세증명서 제출자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국세청 징세 46101-164, 2000. 1. 31)

## IV. 채권의 추심명령과 지방세 압류

### 1. 의의

추심명령 (推尋命令)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대위(代位)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전부명령(轉付命令)과 함께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뒤에 집행법원에 한다.

이는 전부명령과는 달리 채권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기 전에 채권이 소멸하는 위험성은 없으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채권을 전부(全部)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추심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발생한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첫째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그 범위는 집행채권의 추심목적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정된다. 둘째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서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모든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단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그 손실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셋째 추심명령 후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자이며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지고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 2. 지방세 압류와 채권의 추심명령의 병존성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판례] 채권압류의 효력과 추심명령에 의한 변제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채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채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

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 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99다3686, 1999. 5. 14.)

[판례] 세무공무원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가능성

[1]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 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에도, 국가로서는 체납처분당시 경합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0다26036, 2002. 12. 24.)

[판례] 추심명령의 변경의 소급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결정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2000다72589, 2001. 7. 10.)

[판례] 조건부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

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다5252, 2001. 9. 18.)

### 3. 추심명령과 교부청구와의 관계

교부청구는 채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실현절차에 따라 이미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징세관청은 그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강제환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배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다른 채권자란 채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당해 관청 이외의 국세·지방세·공과금 또는 사채 등의 모든 채권자를 말하는바, 이러한 채권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등의 공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환가를 개시한 채권자를 말한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이나 강제환가의 집행을 먼저 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채

권자는 그 먼저 집행한 채권자(집행기관)에게 강제환가대금에서 각 채권액의 배분을 청구하여 다수 채권자의 공동청산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배분의 순위나 배분비율은 국세우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까지 교부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하여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이미 압류한 기관

의 다음 차례로 참가하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압류는 먼저 압류한 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 공매기관에 교부청구를 하여 배분을 받아 체납액에 충당하면 되는 것이나 먼저 압류한 기관이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부청구를 하면 먼저 압류한 기관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압류를 해제할 때는 참가압류를 필요로 하는 관청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압류제도를 두어 먼저 압류한 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한 날에 압류한 것으로 인정되어 참가압류권자는 자동적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